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1일, 김문수 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의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은 「개인 정보 보호법」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종류로, 일정한 공간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2)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에 제한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현행법 상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등의 장소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설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³⁾,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학교시설 및 학교 주변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법 률	조 문	목 적	설 치장소
초·중등교육법 ⁴⁾	제30조의8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학교시설 (학교담장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⁵⁾	제20조의7	학교폭력 예방	학교 내외
이동복지법 ⁶⁾	제32조	유괴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이동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부지 외곽경계선 반경 500미터 이내 일정구역)
학교체육 진흥법 ⁷⁾	제7조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실내외 훈련장, 학생선수기숙사,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⁸⁾	제8조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 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 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부 자료(2025. 2. 11.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6만 대인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실내 설치 건수는 18.5만 대로, 실내 설치 건수 중 복도 및 계단은 11.9만 대, 현관 등 로비는 2.1만 대, 돌봄교실 주변은 1,967대, 교실은 916대, 시청각실은 688대가 설치되어 있음.

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현행법 안에서도 학교 내 CCTV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그런데 현행법 상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시행토록 하고 있어 학교별로 CCTV 설치 사례가 상이하고, 특히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학생 이동이 많은 교실·복도·계단 등 학교 내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정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⁹⁾¹⁰⁾.

개정안에 따라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교권 및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법 체계내에서 구성원 간 동의를 통한 CCTV의 자율적인 설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CCTV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CCTV의 설치·운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9) 개정안(서지영의원안, 김문수의원안)은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규정을 같은 조문 위치에 같은 내용 및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CCTV 설치장소에 관하여 서지영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 김문수의원안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교실제외)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241호)」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바 있음.

(부대의견)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과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아울러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벌칙

개정안은 ①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②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③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¹²⁾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과태료

개정안은 CCTV 설치·관리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¹³⁾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13)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